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 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 ❖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 ❖ 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④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

- ❖ 포함,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①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클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클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 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② 고용관리 메뉴 선택
- ③ 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 ④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⑤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 ⑥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 ⑦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 ①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②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 ③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기재
- ④ 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 ⑤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②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 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 01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
- 03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선택
-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산재' 선택
- 06 산재보험 '상실일' 등을 입력한후
- 07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 01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02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
- 03 사업장 내용 기재
- 04 현장실습생 성명, 상실연월일 등 기재
- 05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③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 ❖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④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

⑤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 ❖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 ❖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
 -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보상범위 · 수준

①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

-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②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

- ❖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참고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급여	장해1급~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 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리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 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원)	자격취득 일 (YYYY.M.DD)	자격취득 부호	특수직종 부호	직연금부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 지원 신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호	체류자격							자격취득일 (YYYY.M.DD)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연금부호	보험료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 종료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1	[]예 []아니오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고용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고용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고용보험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예 []아니오
	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건강보험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 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환우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여선원 및 어선 제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족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 환우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7	o	x	o	x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58	o	x	x	o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EDI 접수시>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단위기관(영업소) 기호	명칭
※ 가입자 정보입력 【녹색칸의 내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구분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개보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성명(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대표자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국민연금			
소득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취득월 납부여부
직역연금부호	없음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말함.	
■ 건강보험			
보수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보험료감면부호
피부양자신청	<input type="radio"/> 있음 <input checked="" type="radio"/> 없음	피부양자분류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공무원/교직원 회계부호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계약종료월	비고
보험료부과 부호			
■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계약종료월	비고
보험료부과 부호			
부호 52 산1 사유 03 현장설명			